

지역본부 및 지부에 관한 규정

제 1 장 지역본부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3조에 의하여 지역본부 및 지부의 조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지역본부 설치 및 조직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및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장에 의한다.

제 3 조 (설치) ① 지역본부의 설치에 정관 제3조1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 각 도에 지역본부를 설치한다.
□ 지역본부의 하부기관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분포를 감안 인근 지부와 통합하여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의 소재지는 지역본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조 연맹에는 다음의 지역본부를 둔다.
① 서울특별시본부 □ 경기도본부 ③ 인천광역시본부 ④ 강원도본부 ⑤ 대전광역시본부 ⑥ 전라북도본부 ⑦ 전라남도본부 ⑧ 광주광역시본부 ⑨ 제주특별자치도본부 ⑩ 대구광역시본부 ⑪ 부산광역시본부 ⑫ 울산광역시본부 ⑬ 충청남도본부 ⑭ 충청북도본부 ⑮ 경상북도본부 □ 경상남도본부 □ 포항시본부 □ 구미시본부 □ 부천시본부

제 5 조 (지역본부의 해산 및 폐쇄) ① 지역본부의 해산은 해당지역본부 총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승인 후 해산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산된 지역본부의 회원 및 자산은 해당지역본부 총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승인으로 인근 지역본부와 합병할 수 있다.
□ 지역본부 설치시의 정회원을 6월 이상 계속 유지하지 못한 지역본부는 연맹 이사회의 의결로 폐쇄 할 수 있다.
③ 이사회에서 폐쇄 결의된 지역본부는 6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해산 총회를 하여야 하며, 폐쇄하는 지역본부의 회원 및 자산은 분할 이전의 지역본부에 귀속되고, 귀속 받은 지역본부는 변동사항을 연맹에 즉시 보고한다.
④ 제3항을 이행 하지 않는 지역본부는 인근지역본부에 합병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⑤ 지역본부의 해산 및 폐쇄 조치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연맹에서 관리 할 수 있다.

제 6 조 (명칭) 지역본부 및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본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본부 ○○○○지부로 칭하고 약칭을 사용 할 수 있다.

제 7 조 (소속지역본부) ① 연맹의 회원은 연맹에 등록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본인이 선택 등록한 지부의 소속지역본부에 속한다.
② 지부 미설치 지역 및 사고 지부는 지역본부에서 직접 이를 관할할 수 있다.

제 8 조 (지역본부운영 및 자산) 지역본부의 운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회원의 관리 및 육성
2. 지역본부의 재무관리 및 제반 업무 수행
3. 연맹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

제 9 조 (지역본부임원) ① 지역본부장을 포함한 지역본부 임원은 당해 지역본부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맹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② 지역본부는 지역본부장 1명과 부지역본부장 3명 이내, 감사 2명 및 운영위원을 둔다.
단 운영위원수는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 및 부지역본부장, 감사의 자격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계속해서 해당 본부에 3년 이상 된 정회원인 자로서, 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총회에서 피선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고 즉시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연맹에서 보관한다.
1. 이력서
2. 아마추어국 허가증 사본
3.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서 정한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의 재정보증서 또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서 원본.
④ 지역본부장은 2년 이상인 회원 중에서 운영 위원을 선출하되, 자격종별 및 회원 분포상태를 감안하여 인선하고 사후에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연맹에 보고한다.
⑤ 지역본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는 현 집행부의 후반기 임기와 차기 집행부 전반부 임기가 겹치도록 한다.

제 10 조 (총 회) 소속 정회원이 300인 이상인 지역본부의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구성에 대하여는 소속 지역본부규정에 따른다.

단, 사고지역본부의 총회는 회원총회로 연맹 이사장이 소집하고, 해당지역본부의 대의원 정수를 초과한 회원의 출석을 성원으로 인정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지역본부규정) 지역본부 총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각 지역본부별 지역본부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12 조 (운영위원회의) ① 지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협의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지역본부장과 부지역본부장 및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지역본부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 14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지역본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2. 연맹 및 유관 기관에 대한 건의
3. 지역본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지역본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클럽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역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5 조 (회의 록) 지역본부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지역본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16 조 (지역본부장의 직무) ① 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지역본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연맹이 위임하는 업무에 대하여 연맹의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6 조 1 (지역본부장의 직무대행)

① 지역본부장이 유고 및 결위 시에는 부지역본부장 중 연

장자순으로 지역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지역본부장 중에서도 지역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이 지역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직무대행자는 제9조 ③항에 명시된 서류를 구비하고 즉시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운영비) 지역본부는 연맹에서 지급하는 지원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단, 지원금은 입회비, 월회비 및 종신 회비의 50%에 한한다.

제 18 조 (보 고) 지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맹에 보고한다.

1. 지역본부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
2. 회계 규정에 의한 제보고
3. 운영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4. 지역본부 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계규정 및 연맹에서 지시하는 사항
6. 본부장, 부분부장,사무총장(국장) 간사는 연맹관련 제규정 교육을 년1회 필히 받아야 한다.(단 지부장, 지부 임원 및 간사는 전달 교육 한다)

제 19 조 (업무보고) 제18조 제2호를 포함한 업무보고는 매월 말에 별지서식에 의하여 익월 15일까지 보고 완료한다.(업무보고시 연맹 납입금을 납입하여야한다.보고 지연및 이를 지키지 않을시 연맹으로 입금된 회원회비 본부지원금을 지원치 않는다)

제 20 조 (감독 및 포상) ① 연맹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자를 지역본부에 출장시켜 업무를 지도 및 감사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며, 징계의 종류는 업무정지, 승진취소 또는 회원관리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는 회원관리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연맹이사장은 매년 회원증가 및 재정확대 등 전년도에 대비하여 지역본부의 발전이 우수한 1개 지역본부를 선정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지역본부로 포상할 수 있다.

제 2 장 지역본부 회계

- 제 21 조** ① 지역본부는 회원의 관리와 수입 사업의 정확한 기록과 계산을 위하여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지역본부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익년 2월 말로 한다.
- ③ 지역본부는 수지 사항에 대한 월별보고를 익월 10일까지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평생회원의 회비관리는 기금으로 계상하여 관리한다. 단,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 ⑤ 지역본부에서 취득하는 자산은 별도의 자산기록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를 한다.
- ⑥ 지역본부 회계에 관한 사항 중 연맹이 중요한 사항에 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 제 1 조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직후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2013. 1. 12. 규정 제18조(보고) ⑥항 신설, 제19조 개정
- 제 3 조 2015. 2. 14. 제16조 ①항 신설
- 제 4 조 2016. 4. 9. 제4조 및 제6조 개정.